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여성지원법안 검 토 보 고

■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157호)

2025. 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II . 총괄 검토	3
1.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내용	3
2. 입법 배경 및 검토 의견	5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10
III . 주요 내용별 검토	11
1. 장애여성정책종합계획,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 실태조사	11
2. 장애여성을 위한 지원	19
3. 장애여성 관련 교육 및 지원을 위한 센터 등의 설치·지정	29
4. 부칙	37

I. 개요

1. 「장애여성지원법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 615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서미화의원 등 15인
- (2) 제 안 일 : 2024. 12. 3.
- (3) 회 부 일 : 2024. 12. 4..

나. 제안이유

장애여성은 교육, 고용 등 여러 분야에서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남성장애인에 비해서도 다중적인 차별구조 속에서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어 생애주기별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그런데 「장애인복지법」 등 기존의 법률로는 충분한 지원을 하기에 미흡하고 전반적인 장애인 정책에서도 장애여성이 소외와 배제 되어 있어, 장애여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고용, 폭력 피해 지원, 고령 장애여성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애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이 법은 장애여성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여 장애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2)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여성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6조).
- (3) 장애여성을 위한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를 둠(안 제7조).
- (4) 장애여성을 위한 교육 지원, 모성보호와 보육 지원, 성·재생산 건강 지원, 고용 지원, 성폭력·성매매·가정 폭력·학대 피해 지원, 성인권교육 지원, 가족 지원, 고령장애여성 지원,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여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하는 장애여성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Ⅱ. 총괄 검토

1.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내용

□ 제정안은 장애여성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위해 장애여성정책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 장애여성교육진흥원, 장애여성종합지원센터 등 추진체계 및 각종 지원기관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장애여성을 위한 교육, 모성보호·보육, 성·재생산 건강, 고용 등 다양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별도의 장 구분 없이 총 34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음.

< 제정안의 구성 체계 >

장애여성지원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지원의 원칙)
제6조(장애여성정책종합계획)
제7조(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
제8조(실태조사)
제9조(교육 지원)
제10조(모성보호와 보육 지원)
제11조(성·재생산 건강 지원)
제12조(고용 지원)
제13조(성폭력·성매매·가정 폭력·학대 피해 지원)
제14조(성인권교육 지원)
제15조(정신장애여성 지원)
제16조(고령장애여성 지원)
제17조(장애여성 가족 지원)
제18조(장애여성 문화예술활동 지원)

제19조(장애여성단체 지원)	
제20조(국제협력 등)	
제21조(장애여성성인권교육진흥원)	
제22조(장애여성교육진흥원)	
제23조(장애여성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24조(정신장애여성 전문상담소)	
제25조(정신장애여성 전문 보호시설)	
제26조(감독)	
제27조(지정취소 등)	
제28조(청문)	
제29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30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2조(벌칙)	
제33조(양벌규정)	
제34조(과태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여성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둘째, 장애여성을 위한 종합정책 수립 및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고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한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두고,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둠.
- 셋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을 위해 교육, 모성보호와 보육, 성·재생산 건강, 고용, 성폭력·성매매·가정 폭력·학대 피해, 성인권교육 등에 관한 지원을 하여야 함.
- 넷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장애여성, 고령장애여성, 장애여성 가족에 대한 관련 시책을 시행하여야 함.

- 다섯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여성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2. 입법 배경 및 검토 의견

- 장애여성은 하나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여성으로서 ‘장애인’과 ‘여성’이 처할 수 있는 이중적 어려움(double disadvantage)에 봉착하게 됨.

즉, 장애여성에게는 여성으로서 겪는 어려움과 장애인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이 각각 별개가 아니라 중첩되고 있으며, 단순히 차별과 억압이 누적되는 것이 아니라 교차(intersectionality)하여, 또 다른 어려움으로 작용함.¹⁾

특히, 우리나라 장애여성의 경우는 지금까지 손상으로 인한 기능적인 불편뿐만 아니라,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와 사회체계 속에서 많은 권리와 참여가 제한되어 왔음.²⁾

- 「장애인복지법」 제31조³⁾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 263만여 명 중 42.2%가 장애여성으로 추정되고 있는데,⁴⁾

1) 서해정·장명성·이경민. (2017). 여성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법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2) 유승희. (2024). 빅데이터를 활용한 여성장애인 이슈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4(8), 52-60.

3) 「장애인복지법」 제31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등록장애인을 2,630,374명으로 추정하였음.

이들의 교육수준, 소득수준, 건강에 대한 만족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등은 상대적으로 장애남성에 비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⁵⁾

- 장애남성의 교육수준은 대학 이상이 21.3%로 장애여성의 11.2%에 비해 10.1%p 높았음.
- 최근 1년간 총 가구 소득 월평균 금액의 경우, 장애남성은 300만 원 이상이 44%로 파악되어, 장애여성의 33.9%에 비해 10.1%p 높았음.
-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장애남성의 47.8%가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데 비해, 장애여성은 34.1% 수준에 불과하였음.
- 현재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의 경우, 장애남성은 67.8%가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장애여성의 만족도는 61.4% 수준으로, 장애남성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한편, 장애여성은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고용상 지위 등과 같은 경제적 측면에서 있어서도 장애남성 대비 상대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⁶⁾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장애남성의 절반 수준으로, 실업률은 1.9%p 높게 조사되었으며,

5)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장애인 실태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장애인의 취업직종·근로형태·근속기간·임금수준 등 고용현황 및 장애인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에 대하여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남성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60.2%인데 비해, 장애 여성은 82.8%로 높게 보고되었음.⁷⁾

□ 이에 제정안은 지난 2008년 12월, 우리 국회가 비준하여 2009년 1월부터 발효되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 유엔 장애인권리협약⁸⁾의 전문 및 제3조 일반원칙, 제6조 장애여성, 제8조 인식제고, 제16조 착취,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자유 등 관련 조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전문

“더.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가정 내외에서 폭력, 상해 또는 학대, 유기 또는 유기적 대우, 학사 또는 착취를 당할 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많음을 인정하고,”

“더.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증진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성 인지적 관점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제3조 이 협약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사. 남녀의 평등

제6조 장애여성

1. 당사국은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다중적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여성이 이 협약에서 정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행사하고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의 완전한 발전, 진보 및 권한강화를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8조 인식 제고

1. 당사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

나. 성별과 연령을 이유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을 근절할 것

제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1. 당사국은 가정 내외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유형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특히 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하여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4). 2024년 상반기 장애인결제활동실태조사.

8) 총 50개 조항과 선택의정서 18개 조항으로 구성된 국제 인권 조약으로, 모든 장애인의 존엄성과 권리, 자유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2006년 12월, 뉴욕의 UN본부에서 개최된 제61차 UN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

고 인지하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및 교육의 제공을 포함하여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적절한 형태의 지원 및 보조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당사국은 연령, 성별 및 장애를 고려하여 이러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3.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기관이 장애인에게 제공되도록 고안된 모든 시설과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것을 보장한다.
4. 당사국은 보호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피해자가 된 장애인의 신체적, 인지적 및 심리적 회복, 재활 및 사회적 재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회복 및 재통합은 피해자의 건강, 복지, 자아존중, 존엄성 및 자율성을 증진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며, 성별과 연령에 따른 특수한 욕구를 반영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및 학대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기소하기 위하여, 여성과 아동에 중점을 둔 법률과 정책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법률과 정책을 마련한다.

장애여성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로는 장애여성정책종합계획 수립·시행,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두고,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교육, 모성보호와 보육, 성·재생산 건강, 고용, 성폭력 등 학대 피해 지원 등 장애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과 동시에 통합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장애여성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장애여성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법적 성격의 단독 법률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 다만, 제정안 제6조, 제7조, 제8조 등에서는 ① 장애여성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실태조사 등 기존 장애인 관련 정책의 체계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

② 현행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여러 법률에서 이미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여성을 위한 지원과 유사한 내용이 명시되어 이를 근거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

③ 장애여성 관련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기관 및 센터의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이 모두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상담 및 보호시설의 경우는 기존 전달체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제정안과 같이 장애여성에 대한 기본법 성격의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과 기존 장애인 관련 개별 법령 및 이에 근거하여 실시 중인 장애여성 관련 지원 정책 및 법령 등을 보완하거나, 개정하는 방안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입법 측면에서 효율적인지, 법체계 정합성 유지에 부합하는지, 장애여성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제고에 효과적인 것인지에 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관계 부처⁹⁾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장애여성에 대한 종합적 계획 및 정책 추진을 위한 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장애평등정책법안」(최보운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57호), 「장애인권리보장법안」(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542호), 「장애인권리보장법안」(최보운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162호),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최보운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3163호) 등 장애인 관련 법률안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으므로, 관련 법안과 함께 통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나. 기획재정부

- 현행 법률에 따라 이미 지원 중인 사업(장애여성에 대한 교육 지원, 모성 보호와 보육 지원, 고용 지원, 성폭력·성매매·가정 폭력·학대 피해 지원, 가족 지원 등)이 실시 중에 있으므로, 신규 법률 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재원 마련 의무 조항(제정안 제3조제5항)의 경우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있는 타 장애인 지원 사업과의 형평성 고려 시 강행규정으로의 제정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임.
 - 예산 지원 여부는 수혜대상, 유형,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임.

9) 그 외 관계 부처 의견은 소관 업무와 관계있는 개별 조문에 한정하여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주요 내용 별 검토 중 해당조문 부분에서 별도로 소개함.

Ⅲ. 주요 내용별 검토

1. 장애여성정책종합계획,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 실태조사

제6조(장애여성정책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여성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여성의 복지에 관한 사항
2. 장애여성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장애여성의 문화예술활동, 체육활동, 관광에 관한 사항
4. 장애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5. 장애여성의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6.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폭력 예방 및 그 대책에 관한 사항
7. 장애여성의 모성보호와 성·재생산 건강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그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제7조에 따른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 ① 장애여성을 위한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장애여성정책의 기본방향

2. 장애여성정책의 추진 목표

3. 장애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4. 장애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한 민관 협력 방안

5. 그 밖에 장애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를 둔다.

제8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여성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애여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안 제6조 장애여성정책종합계획)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장애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 관련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5년마다 장애여성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각 부처의 사업과 종합계획 간 연계를 통해 장애여성 관련 정책 및 사업을 보다 체계적·통일적으로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제정안에 따른 장애여성정책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법정사항이 서로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제정안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장애여성종합계획이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되는 방식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커 보이므로, 장애여성을 위한 별도의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한다면, 장애여성에 보다 특화된 법정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장애여성정책종합계획과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법정사항 비교 >

장애여성정책종합계획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장애여성의 <u>복지</u>에 관한 사항 • 장애여성의 <u>교육</u>에 관한 사항 • 장애여성의 <u>문화예술활동</u>, 체육활동, 관광에 관한 사항 • 장애여성의 <u>경제활동</u>에 관한 사항 • 장애여성의 <u>사회참여</u>에 관한 사항 •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폭력 예방 및 그 대책에 관한 사항 • 장애여성의 모성보호와 성·재생산 건강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u>장애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u>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장애인의 <u>복지</u>에 관한 사항 • 장애인의 <u>교육문화</u>에 관한 사항 • 장애인의 <u>경제활동</u>에 관한 사항 • 장애인의 <u>사회참여</u>에 관한 사항 • 장애인의 <u>안전관리</u>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u>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u>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여성정책종합계획의 법정사항 중 ‘장애여성의 문화예술활동, 체육활동, 관광에 관한 사항’(제정안 제6조 제2항제3호)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3조, 제7조, 제14조, 특히 예술 분야의 경우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며, 체육 분야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한 다양한 ‘장애인 체육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제정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함.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가”란 자유 시간 동안 행하는 강제되지 아니한 활동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한다.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콘텐츠, 문화콘텐츠, 디지털콘텐츠, 디지털 문화콘텐츠, 멀티미디어콘텐츠, 공공문화콘텐츠, 에듀테인먼트

다. 「관광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관광

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체육, 생활체육

제7조(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여가 활성화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을 포함한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14조(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고 아동(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이 과도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여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예술인 창작·전시·공연 활동의 지원

2의2.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4.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5.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운영

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방안 연구

9.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안 제7조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 장애여성을 위한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 이행의 감독·평가를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¹⁰⁾에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사무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별도로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를 두기보다는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는 분과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므로,¹¹⁾ 이러한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에서는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사

10) 「장애인복지법」 제11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①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특수교육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중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이동보장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
- 7의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2항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사이의 협조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를 둔다.

⑤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0조(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장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법제처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④ 위촉위원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⑤실무위원회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이동편의분과, 장애인고용 확대분과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국무조정실 및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⑦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본다.

무기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① 현재 장애인정책을 총괄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도 사무기구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

②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합의제행정기관을 제외한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없고, 그 주된 기능이 특정 행정기관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여러 행정기관의 소관 기능을 조정하거나 종합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무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¹²⁾ 등을 고려하여,

사무기구 설치 여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문위원회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무기구를 둘 수 없으므로 해당 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1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이하 "행정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獨自性)이 있을 것
4. 업무가 계속성·상시성(常時性)이 있을 것

②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② 자문위원회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常勤)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무 지원을 하기 곤란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① 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직원을 둘 수 있는 위원회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등(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으로서 그 주된 기능이 특정 행정기관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행정기관의 소관 기능을 조정하거나 종합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있도록 하고 있는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별도로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를 두는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임.

□ (안 제8조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장애여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장애인복지법」 제31조¹³⁾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에 이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실태조사에서 장애인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을 총괄하여 조사하므로, 조사 내용이 중복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다만, 장애여성에 대한 보다 특화된 실태 파악이 요구되는 경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관련 조사사항을 추가로 개발하여 반영하거나, 성별 분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의 보완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참고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 장애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을 규정하면서, 특별히 성별을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따로 명시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고, 표본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에서 조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3) 「장애인복지법」 제31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성별, 연령, 학력, 가족사항 등 장애인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발생 원인 등 장애 특성에 관한 사항
3. 취업·직업훈련, 소득과 소비, 주거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보조기구의 사용, 복지시설의 이용, 재활서비스 및 편의시설의 설치요구 등 복지요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인보조기구의 지급 및 장애인등록제도 등 복지지원상황에 관한 사항
6. 일상생활과 여가 및 사회활동 등 사회참여상황에 관한 사항
7. 생활만족도와 생활환경에 대한 태도 등 장애인의 의식에 관한 사항
8.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등을 위한 복지요구에 관한 사항
9. 가구유형·가구소득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비교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장애여성을 위한 지원

제9조(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이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의 취업과 진로에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장애여성의 취업과 진로에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 및 평생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모성보호와 보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의 모성보호와 보육여건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산전·산후 건강 관리
2. 출산비용 지원
3.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4. 육아도우미 및 가사도우미 지원
5. 자녀 보육 및 방과후 아동지도 도우미 지원
6. 그 밖에 장애여성 모성보호에 필요한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모계유전질환을 가진 장애여성이 임신을 원할 경우 산전 검사 및 시험관 시술, 난자의 유전성 여부 검사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여성의 희귀모계유전질환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의 감면 비율은 100분의 90 이상으로 한다.

제11조(성·재생산 건강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의 성·재생산 건강유지를 위한 전문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에 장애여성을 고려한 시설·장비를 확충하고, 장애여성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고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의 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안정을 이루도록 장애여성에게 적합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훈련, 직종 개발, 근로지원 서비스 제공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이 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장애여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여성(「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중 여성인 사람을 말한다)의 사회참여 기회 및 고용 확대 촉진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학대 피해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여성에 대한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학대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을 위한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학대 피해자 보호시설 및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생활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을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청소년, 여성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 및 장애인 학대 피해 지원기관이 장애여성 관련 지원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운영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성인권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의 성인권을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 등에 따른 특성이 반영된 성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장애여성을 위한 성교육에는 아동과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장애여성을 위한 성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정신장애여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장애여성(「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장애여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고령장애여성 지원) ① 국가는 고령장애여성(60세 이상인 장애여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고령장애여성을 위한 요양전문병원과 시설을 확충하여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체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고령장애여성에게 고령장애여성을 위한 복지서비스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고령장애여성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안내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장애여성 가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이 원하는 가족을 이루어 평등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그 가족을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여성 가족 인식개선 지원

2. 장애여성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여성 가족 사례관리 지원

4. 장애여성 가족 역량강화 지원

5. 장애여성 가족 상담 지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여성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여성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장애여성 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장애여성 문화예술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의 문화예술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장애여성 예술인 또는 장애여성 예술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장애여성단체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이하 “장애여성단체”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국제협력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 국제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 공동연구 개발 등 장애여성에 관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정안은 제9조에서부터 제20조까지의 조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여성을 위한 교육, 모성보호와 보육, 성·재생산 건강, 고용, 성폭력·성매매·가정 폭력·학대 피해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각각의 개별 조항 제목에서는 장애여성을 위한 지원사항을 명시하고, 대체로 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실시·구축·지원·시행 등의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전반적인 장애여성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규정하고, 이하 항에서는 세부적인 내용 및 실행방법 등을 적시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의 허들에 가로막혀 있는 장애여성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의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어, 이들의 권리보호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및 집행 시 타당성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별조항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

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재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에는 이미 유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장애인(장애여성 포함)에게 실시되고 있는바, 장애여성만을 위한 별도 지원 전달체계 구축이 가져올 업무의 혼선 등을 고려하여 지원 내용별 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제정안과 유사한 법률 규정 주요내용 >

제정안	유사 법률 및 주요내용
제9조(교육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20조) 장애인이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장애를 이유로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 차별금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금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0조)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및 직업능력 평가 등 실시, 고용정보 제공 등 직업지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장애인이 희망·적성·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적응훈련 실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2조)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 (평생교육법 제19조) 평생교육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제 10 조(모성 보호와 보육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37조) 임신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55조) 여성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 •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임신부에게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관련 지원 • (모자보건법 제11조)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상담 및 교육 등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임신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의 이용을 지원 • (아이돌봄지원법 제13조의2) 장애인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모

제정안	유사 법률 및 주요내용
	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 11 조(성·재생산 건강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18조) 기능치료,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 및 장애인보조기구 제공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9조)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이동편의 등 제공 • (구강보건법 제15조의2) 장애인의 구강보건 및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중앙장애인가구강진료센터 설치 •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장애인인 가입자에게는 보조기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음
제 12 조(고용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5조)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 알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비용 또는 기기 지원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 차별금지
제 13 조(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학대 피해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장애인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폭행·상해 등 금지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장애인학대 예방 등을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운영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성폭력 피해상담, 법률상담 등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설치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성매매 방지활동 및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서비스 연계·조정 등을 위하여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설치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운영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5조)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 14 조(성인권교육 지원)	•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

제정안	유사 법률 및 주요내용
	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성인지교육) 실시 •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 양성평등교육 추진·진흥을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설립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설치
제 17 조 (장 애 여 성 가 족 지 원)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 가정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해 적극적 지원 • (건강가정기본법 제25조) 질환이나 장애로 가족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 지원, 전문보호시설 확대
제 19 조 (장 애 여 성 단 체 지 원)	• (장애인복지법 제63조)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 둘째, 안 제15조는 정신장애여성에 대한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규정하면서, 정신장애여성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장애여성으로 정의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따라서 제정안에서의 정신장애여성에는 발달장애인(지적장애+자폐성장애)이 포함되는데,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이미 그 지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독립된 개별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후견지원,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최

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등의 각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복지재정 측면에서 정신장애여성의 범위에 발달장애인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23년 기준, 발달장애인 중 남성은 173,734명, 여성은 98,790명이고, 정신장애인 중 남성은 52,499명, 여성은 51,698명으로 조사되었음.¹⁴⁾

<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

구체적 지원 정책 및 사업	• 목적: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생애주기별 특성 및 복지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및 지원체계 구축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
	• (발달장애인 부모·가족지원)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와 보호자의 양육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정보 및 교육지원,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 정서적 상담 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함께하는 여행 지원
	•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운영지원) 발달장애인 및 가족에게 필요한 생애주기별 서비스와 정보를 개인별지원계획을 통해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원스톱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을 지원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지원)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지원 및 자·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는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운영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지원)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시간 보장 및 보호자의 돌봄부담 경감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지원)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여 사회·경제적 활동 지원
	• (바우처시스템 개발 및 운영)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자바우처 생성·제공 등 시스템 운영 및 지원
	•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 신탁자금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사적 재원을 활용하여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수요 충족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단기 보

14) 한국장애인개발원, (2024). 2024 장애통계연보.

	호 체계 지원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주중 지역사회 낮활동과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돌봄서비스 제공 •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 장애인복지관 등에 시설 보강과 전문인력을 지원하여 개인별 맞춤형 낮 활동 서비스 제공 •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지원)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여 낮 시간에 그룹형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배치 지원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 장애인 돌봄 사업 평가. 재구성.

- 셋째, 안 제16조는 고령장애여성을 위한 국가의 사회적 환경 조성, 체계적 지원, 정당한 편의 제공 등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고령장애여성의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음.

사회보장제도에서 복지서비스 대상이 노인인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연령은 65세 이상이 대부분임에도,¹⁵⁾ 제정안에서는 고령장애여성의 연령 기준을 60세로 설정한 이유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또는 대상인구 전체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기대여명¹⁶⁾이 낮다는 점¹⁷⁾, 일반적으로 생애주기를 나눌 때 노년기를 60세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¹⁸⁾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다만, 장애인의 사망 시 평균연령 통계를 살펴보면, 장애유형에 따른 차이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뇌전증의 경우는 각각 57.9세, 22.5세, 57.9세로 60세에 미

15) 기초연금의 수급 연령은 65세 이상이고, 노인 무임승차제, 철도 운임 할인, 고궁 등의 무료입장과 같은 경로우대제도와 취약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모두 연령 기준이 65세 이상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정의하고 있음.

16) 출생 시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생존연수

17) 2017년에는 비장애인 84.4세, 장애인 68.0세로 16.4년의 차이를 보였음.(김정애 외 3인. (2022). 장애인의 기대여명과 건강수명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보건사회연구 42(2).)

18) 신희정, 김두영, & 권정숙. (2023). 지체장애 성인 여성의 생애주기별 결혼 및 가족 관련 실태 및 복지요구 분석.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7(4), 279-289.

치지 못하고 있으며, 정신장애와 간 장애는 각각 63.7세, 61세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사망시 평균연령 >

(단위: 세)

구분	평균	남성 평균	여성 평균
계	77.9	75.3	81.2
지체	78.9	75.0	83.1
뇌병변	75.4	73.2	78.1
시각	80.5	77.9	83.9
청각	85.3	83.6	87.3
언어	73.6	72.6	76.8
지적	57.9	56.9	59.7
자폐성	22.5	23.1	19.8
정신	63.7	62.9	64.7
신장	71.8	70.9	73.2
심장	71.9	71.7	72.3
호흡기	72.2	72.9	69.4
간	61.0	61.3	60.2
안면	74.0	71.8	77.3
장루·요루	75.5	74.5	77.2
뇌전증	57.9	57.7	58.3

자료: 국립재활원. (2022). 장애인건강보건통계. 재구성.

□ 한편, 여성가족부에서는 제13조제2항 관련, ‘장애여성을 위한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학대 피해자 보호시설 및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생활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은 여성가족부 소관이므로 그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면 부처 간 권한 충돌의 우려가 있어 보이며,

제13조제3항 관련, ‘여성 성폭력피해 지원기관’만을 연계기관으로 국한할 경우, 포괄적 여성폭력 피해여성의 권리구제가 제한됨에 따라 ‘여성폭력 피해 지원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제13조(성폭력·성매매·가정 폭력·학대 피해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학대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을 위한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학대 피해자 보호시설 및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생활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을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청소년, 여성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 및 장애인 학대 피해 지원기관이 장애여성 관련 지원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운영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장애여성 관련 교육 및 지원을 위한 센터 등의 설치·지정

제21조(장애여성성인권교육진흥원) ① 국가는 국민의 장애여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장애여성에 대한 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장애여성성인권교육진흥원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장애여성성인권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여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종사자의 장애여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2. 일반 국민의 장애여성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애여성에 대한 성교육
4. 장애여성에 대한 인식개선·이해증진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장애여성성인권교육진흥원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그 밖에 장애여성성인권교육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장애여성교육진흥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여성교육진흥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여성교육진흥원을 설치·운영하려고 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장애여성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여성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및 평생교육
2. 장애여성의 전문교육 및 평생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3. 장애여성을 위한 전문교육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4.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 및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
5. 장애여성에 대한 교육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장애여성교육진흥원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장애여성교육진흥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여성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장애여성교육진흥원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장애여성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장애여성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장애여성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려고 할 때에는 시·도지

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정신장애여성 전문상담소)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에서 정신장애여성에 특화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장애여성 전문 상담소(이하 “전문상담소”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5.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

② 전문상담소의 지정기준 등 전문상담소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정신장애여성 전문 보호시설)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에서 정신장애여성에 특화된 보호를 제공하는 정신장애여성 전문 보호시설(이하 “전문보호시설”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5.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

② 전문보호시설의 지정기준 등 전문보호시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제21조에서부터 제25조까지의 조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여성을 위한 교육, 통합 지원체계 마련, 정신장애여성

에 대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센터 등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이를 통해 장애여성과 정신장애여성의 특수성과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전문성 있는 지원의 기반이 갖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제정안에 따라 설치 및 지정되는 각 기관 및 센터 등의 명칭, 목적, 수행 업무, 설치·운영방식 등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제정안에 따른 각 기관 등 비교 >

구분	장애여성 성인권교육진흥원	장애여성 교육진흥원	장애여성 종합지원센터	정신장애 여성 전문상담소	정신장애 여성 전문보호시설
목적	• 국민의 장애 여성에 대한 이해 증진 • 장애 여성에 대한 효과적 교육 실시	• 장애 여성에 대한 교육 평등권 보장 • 장애 여성에 대한 교육 기회 제공	• 장애 여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 • 장애 여성에 대한 통합 지원 체계 마련	• 정신장애 여성에 대한 특화된 상담 서비스 제공	• 정신장애 여성에 대한 특화된 보호 제공
설치·운영방식	• 국가가 설립·운영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할 수 있음 • 그 외의 설립·운영도 가능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할 수 있음 • 그 외의 설립·운영도 가능함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설립·운영할 수 있음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설립·운영할 수 있음

로 규정하기 보다는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총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는 ‘장애여성종합지원센터’의 경우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구체적인 수행업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둘째, 안 제21조와 안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여성성인권교육진흥원과 장애여성교육진흥원의 경우는 각각 “국가가 ~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그 법적 성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의 일부인지 아니면 민간기관인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유사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법률에서 ‘법인으로 한다.’ 또는 ‘공공기관 중 위탁할 수 있다.’ 등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여 법적 성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양성평등교육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키기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46조의2(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예방·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복지진흥 등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셋째, 안 제24조와 안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장애여성 전문상담소와 정신장애여성 전문 보호시설의 경우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여성종합지원센터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중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기존 유사한 전달체계를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나, 두 기관 모두 발달장애(지적장애+자폐성장애) 및 정신장애(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이 주된 질환)를 가지고 있는 정신장애여성에 대한 특화된 상담서비스와 특화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에서와 같이 이미 고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지정·활용하여 정신장애여성에 대한 상담이나 보호 업무를 추가하는 지정·운영 방식이 적합할지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또한 정신장애여성 전문상담소와 정신장애여성 전문 보호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에 장애여성종합지원센터가 포함되어 있는

데, 동 기관은 전술한 바와 같이 장애여성에 대한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책무의 효과적 수행 및 통합 지원체계 마련하기 위한 총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대면 상담 업무 또는 보호시설의 기능을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제정안 제21조에서부터 제23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 여성성인권교육진흥원, 장애여성교육진흥원, 장애여성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각 기관들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보임으로, 만약 중앙행정기관의 ‘하부조직’ 또는 ‘부속기관’으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직제)으로 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하부조직이 아닌 경우는 ‘법인’으로 명시하는 등 법적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거나, 연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장애여성성인권교육진흥원’, ‘장애여성교육진흥원’, ‘장애여성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기획재정부는 이들 기관의 수행 업무는 「장애인복지법」,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문·평생 교육 수립·운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육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등 타 법률에 근거하여 이미 지원 중이므로, 그 설립 및 설

치·운영·지정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별도 기관 신설보다는 기존 전달체계(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교육부에서는 제정안 제22조(장애여성교육진흥원) 관련, 장애여성을 포함한 국민 및 장애인의 평생교육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수준의 기구가 이미 「평생교육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설치·운영 중에 있으므로 별도 체계 신설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평생교육법」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① 국가는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9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①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이하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라 한다)를 둔다.

4.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여성에 대한 고용, 교육 등 각종 지원책 강구, 관련 종합계획,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 실태조사, 장애여성성인권교육진흥원, 장애여성교육진흥원, 장애여성종합지원센터 등 장애여성 관련 정책 및 제도, 기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바,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간 논의, 시범사업 및 예산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한다면, 시행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제정안의 시행일은 하위법령 마련, 관련 예산확보(필요하다면 시범사업 실시)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아닌 2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502
